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246808 판결 [보증채무금]

## 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11. 12.

판결 선고 2024. 12. 17.

## 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4,990,969원 및 그중 30,082,485원에 대하여 2024. 3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주식회사 D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의 대표이사이다.

나. 원고는 2022. 10. 26. 소외 회사에 그랜저 가솔린 3.3 차량을 장기렌트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렌트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면서, 월 납부금은 1,080,080원, 대여기간은 60개월로 정하였다.

다. 이 사건 렌트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신청서류(이하 '이 사건 계약신청서'라 한다)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성명 및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 1 생략)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.  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단

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월 납부액을 연체하여 이 사건 렌트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,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가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임대료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 및 자필 기재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, 위 자필 및 서명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이 사건 렌트계약 체결 당시 피고 본인 확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, 피고는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 명의로 개통되었으나 소외 회사측의 요청으로 건네주어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, 위와 같이 본인 확인을 한 사람이 피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또한,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, 갑 제7,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결국 피고가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,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 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판사윤소희**